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2016.12.26.)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

4. 주요내용

- 토석채취료 관련 산림청과 행정자치부간의 협의안 반영(안 제30조)
 - 원석시가 산정기준 변경 : 용도별로 기준하여 산정
- 개정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함(안 제40조)

5. 검토의견

- 위 개정조례안은
 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2016.12.26.)에 따라

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0조에서는 원석시가 산정기준을 “용도별로 기준하여 산정”함으로써 기준을 구체화하였고,
- 안 제40조에서는 개정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하였음.

○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기관인 행정자치부, 산림청의 운영기준 및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안 제30조는 「산지관리법」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목을 “채광물채취료 등”에서 “토석 채취료 등”으로 수정하고, 같은 조 2항에 원석시가 적용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,

같은 조 4항에 “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”는 지난 제352회 임시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위 조례를 개정한 만큼 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